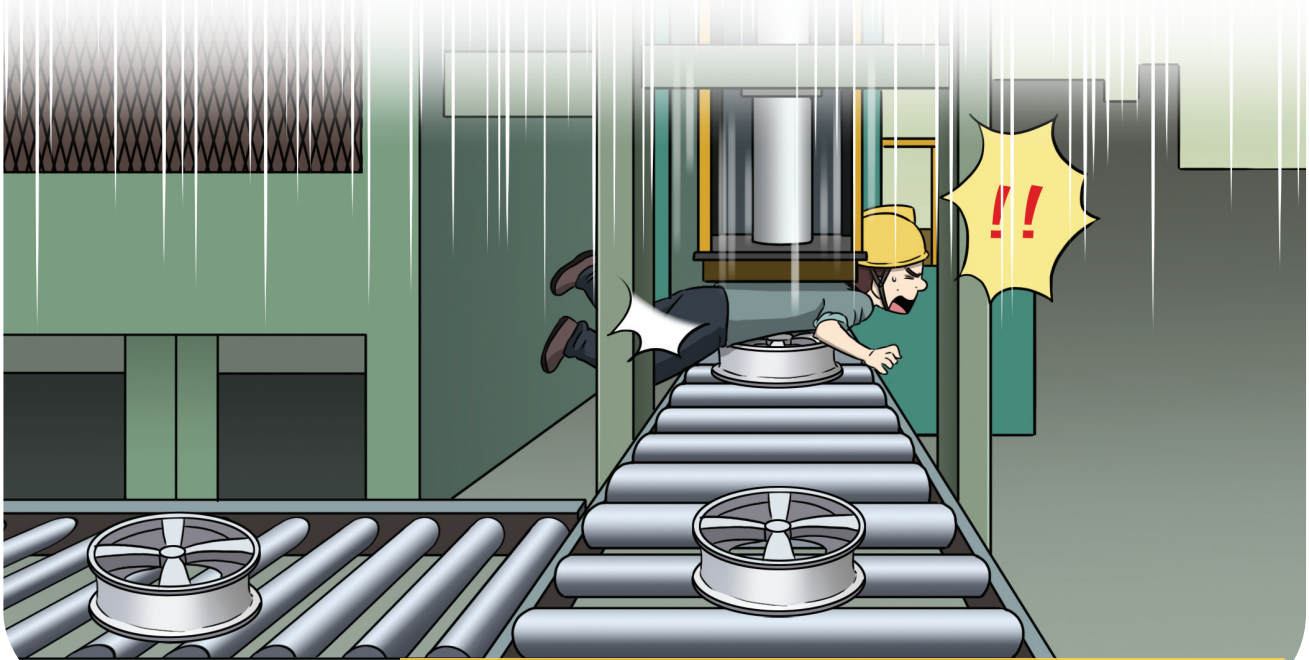




자동차휠 로더에 협착



Gate연삭기에서 자동차휠 이동장비인 휠로더 동작영역 내에 진입하여 이물질 제거, 에러발생 조정 등의 작업을 하다가 휠로더와 컨베이어에 올려져 있는 자동차휠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



발생 원인

- 가동 중인 휠로더의 작업영역 내로 진입
- 휠로더 작동부 방호울 미설치

TIP

안전작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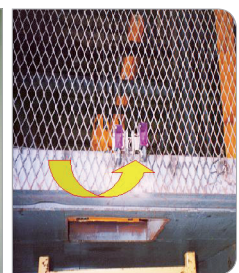
- 1 수리 등의 작업 시 전원차단**
 - 휠로더의 수리, 점검, 정비 등 작업 시에는 해당 기계설비의 운전을 정지하고 메인 스위치에 '점검 중' 표지판 부착
- 2 방호울 연동장치 설치**
 - 휠로더 내부로 임의로 들어갈 수 없도록 방호울을 부착하고 출입문 개방 시 휠로더의 작동이 멈추도록 연동장치 설치



점검 중
표지판 부착



메인스위치
시건장치 설치



방호문
연동장치 설치

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(고장 난 기계의 정비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(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(방호장치의 해체 금지)





자동차휠 로더에 협착

정비 등의 작업 시에는 설비가동을 정지하세요!



*휠로더 : 컨베이어에 의해 운반되는 휠을 연삭기로 이동하는 설비로 공압에 의해 작동 (90초에 1회 작동)

